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2. 4.(목) 10:2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2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오늘 회의 개의 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20분 지체가 됐습니다. 상임위원들 사이에 논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2. 국민의례

####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 제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2월 2일 있었던 제7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2건, 또 <심의·의결 제의사항>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상정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주)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6-08-017)

###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주)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케이티가 인터넷 회선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금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이용약관관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조사배경은 작년 9월에 (주)케이티 새노조 및 참여연대가 “(주)케이티, 구체적으로는 안양지사가 (주)유빈스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액하고 실제 사용되지 않은 1,000여 회선은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조사대상은 (주)케이티와 (주)유빈스입니다. 기초사실로 (주)케이티의 올레인터넷 이용약관에 따르면 “계약기간 할인”, “다량회선 할인”, “공동청약 할인” 등의 요금할인이 가능하며, (주)유빈스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할인”만 가능해서 최대 3년 약정 시 약 15%에서 29%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를 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에는 할

인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입니다. 먼저 부당 감액과 관련해서 '14년 1월 (주)케이티는 이용약관에 정한 할인요금 보다 7,500원 내지 12,000원 저렴하게 월 18,000원에 (주)유빈스와 개별계약을 체결했고, '14년 1월부터 '15년 11월까지 인터넷요금 25억 9,533만원 중 12억 180만원을 이용약관과 다르게 할인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매한 1,070회선 중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한 536회선에 대한 할인반환금 5,928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한 사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개통입니다. 인터넷회선 추가 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요회선을 예측하여 한번에 대량으로 선개통을 해 놓고 요청 시 이용약관에 정해진 청약절차 없이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매월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대조작업을 통해서 미사용 회선에 대해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1,029회선을 선개통하였으나 '15년 5월까지 대부분 미사용 회선으로 남아 있었고, '15년 5월에 케이티의 자체감사에서 적발이 되어 이 중에서 891회선을 일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케이티 안양지사에서 부당 감액 및 연말에 집중적으로 선개통한 것을 개인 실적으로 올리고, 또 회선 개통 시에 제공되는 관측비를 유용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주)케이티 안양지사 관련자 17명에 대한 중징계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를 주도한 팀장급 1명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각각의 위법성 판단과 제재방안입니다. 먼저 부당 감액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별표4] 제5호마목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선개통은 동법 시행령 [별표4] 제5호나목제3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다만 선개통을 통한 미사용 회선은 명의도용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그리고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금년 4월 말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령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부과입니다. 먼저 관련 매출액은 31억 9,300만원으로 산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직접적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자체감사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관련자 징계 및 형사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서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필수적 가중은 없고 조사 기간 중에도 위법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20%를 추가적 가중하고, 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서 20%를 추가적 감경하여 최종적으로는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보고한 이 사안은 신고가 들어와서 (주)케이티와 (주)유빈스에 대해서 조사하게 된 것이지요?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주로 법인, 이용자가 많은 단체, 기업 이런 곳에 일종의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개별 이용자들에 대한 브로드밴드(Broadband) 서비스와 다르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법인을 상대로 오랫동안 이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하다 보면 사업자 간 경쟁도 치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케이티와 (주)유비스를 조사하면서 (주)케이티의 다른 협력업체나 아니면 다른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는 같이 해 봤습니까? 실태점검이라도 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실태점검만 실시하였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모두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 이번 위법사항 중 선개통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고, 부당 감액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차별(...), 그래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다든지, 아니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당한 내부 보조나 비용과 수익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을 다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부당 감액을 보면 그런 금지행위 유형 위반의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서 약관을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법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실태 점검 또는 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그런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지를 사전에 예방 내지는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시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끝으로 궁금한 것은 최종 과징금이 3,190만원이 나왔는데 관련 매출액이 32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보통의 대규모 통신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관련 매출액은 규모가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과징금 금액도 경우에 따라 수십 억, 때로는 수백 억이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주)유

빈스로부터 가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 제가 보기에선 신고에 의해서 (주)케이티, (주)케이티 협력업체인 (주)유빈스, 이런 특정업체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하게 됐지만 여기에서 위법한 행위 유형이 조금 더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조치를 향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이 안건의 전체 취지는 이용약관에 따르지 않고 감액해 주거나 또는 위약금을 면제해 준 것을 제재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혜택을 받은 소수일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제재하는구나' 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개인적인 이용자라기보다는 이것은 기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김재홍 부위원장

- 단체기업이 많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하여튼 이통사로부터 작은 혜택을 받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계속해서 이런 감액과 위약금 면제를 널리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통사가 다 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현재는 B2B(기업간 거래), 기업 대상 시장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져 왔고 이번 조사 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용약관에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원금 문제도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 요컨대 지속적인 혜택, 그리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혜택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규제한다, 제재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그마한 혜택을 봤다고 해서 그 당사자들이 '우리는 좋은데 왜 그것을 정부가 개입해'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짚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큰 시장 교란행위는 아닐지 모르지만 덩핑한 것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할인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할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약관을 개선해서 이용약관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따라서 비록 B2B이긴 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사용료를 올리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알뜰폰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에 관한 건 (2016-08-018~036)**

##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알뜰폰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배경은 작년 7월부터 외국인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13개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경찰청에서 통보한 사업자를 포함해서 총 19개 사업자로 확대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주)아이즈비전 등 17개 사업자는 2006년 7월부터 '15년 8월까지 주민번호 등 불법 취득한 내·외국인의 개인정보와 우리나라를 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의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19,566명의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24,683회선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법성 판단 및 제재방안은 행위가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반행위는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한 후에 이를 다시 번호이동한 행위로서 소위 해지벤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17개 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15년 7월까지 6,865명의 8,876회선을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고 이 중에서 109명의 197회선의 회선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에 또 다시 번호이동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현황은 다음 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 제재방안도 생략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로서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17개 사업자는 2006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관에서 정한 회선수를 초과하여 개인 3,117명의 명의로 총 23,497회선을, 그리고 1,948개 법인 명의로는 85,411회선 등 총 108,908회선을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현황과 사업자별 최소·최대 초과회선 현황 등 아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동전화 회선을 제3자 명의로 개통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여 재판매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주)유니콤즈 등 10개 사업자는 2012년 8월부터 '15년 7월까지 340명의 제3자 명의로 10,076회선을 가입시킨 후에 명의를 변경하여 또 다시 재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주)인스코비 등 12개 사업자는 2006년 8월부터 '15년 8월까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1,307명의 명의로 1,343회선을 가입시키고 이 중에서 25회선을 다른 이용자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에게 허위로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한 행위입니다. (주)한국케이بل텔레콤은 2013년 9월부터 11월 기간에 개통처리를 할 수 없는 158명 모두 동일한 외국인등록증 번호와 이름으로 가입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국·사망·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이용정지 또는 해지시키지 않은 행위로서 (주)인스코비 등 17개 사업자는 2003년 9월부터 '15년 8월까지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외국인 중에서 출국·사망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47,934명의 외



국민 이동전화 52,537회선을 이용정지 또는 해지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유니컴즈 등 11개 사업자는 2011년 11월부터 '15년 7월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된 163명의 외국인의 이동전화 220회선을 다른 이용자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으로서 19개 알뜰폰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즉시 중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 절차 개선, 그리고 이용약관 변경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의 기본방향입니다. 알뜰폰사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알뜰폰사업이 초기단계에 있고 알뜰폰사업자의 운영 및 시스템 등이 미비했던 점을 고려해서 위반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업규모나 매출액 등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기준금액을 1,0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 정하되 사업자별로 그 위반행위와 위반건수 등을 고려해서 10회선 초과, 100회선 초과, 1,000회선 초과, 5,000회선 초과, 10,000회선 초과의 5단계로 차등 적용하되 10회선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서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9쪽 마지막 위반행위 중에 출국·사망·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이용정지 또는 해지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와 동일한 사안으로 작년 5월 제20차 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유예한 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나머지 6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20쪽에 보시면 6개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의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액과 종합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대 9,450만원, 최소 550만원을 부과하고 총 금액은 8억 3,450만원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이 안건에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알뜰폰사업자들의 위반행위들을 보면 과거 대규모 통신사들이, 특히 이통 3사들이 많이 했던 그런 위법행위들인 것 같습니다. 이통 3사는 그동안에 방통통신위원회에서도 많은 조사·제재를 해서 많이 찾아드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알뜰폰사업자들이 과거 이통 3사들의 위법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알뜰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박 국장께서는 '19개 알뜰폰사업자들이 사업초기 단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9개 사업자를 분류해 보면 에스케이텔링크(주), (주)케이티엠모바일, 케이티파워텔(주), (주)미디어로그, 이것처럼 이통 3사의 자회사 형태로 알뜰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에스케이텔링크(주)나 케이티파워텔(주)은 업력 자체도 통신사업을 한 지 아주 오래됩니다.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또 (주)씨제이헬로비전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 그리고 세종텔레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주)아이즈비전, (주)한국케이بل텔레콤처럼 대규모 기간통신사업자는 아니지만 통신사업자로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온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에 알뜰폰사업을 시작해서 아직 경험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한 이런 형태들이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통 3사의 자회사 형태로 알뜰폰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그리고 대규모 통신사나 니치마켓(Niche Market)에서 오랫동안 통신사업을 해 온 그런 사업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법정기준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대신 저는 더 잘했어야지, 상식적으로 봐서 위반을 덜 하거나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아까 알뜰폰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측면,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싼 요금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동시에 오늘과 같은 이런 어두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알뜰폰 시장의 좋은 기능, 국민들에게 싼 요금으로 퀄리티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국민들, 이용자들이 알뜰폰을 이용할 때 이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유의할 수 있도록, 이것을 또 홍보까지 해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 착안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소위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격인 몇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금액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까지는 아니지요?

####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그쪽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고 더 제대로 업무를 처리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기업일수록 사회적 책무가 더 높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알뜰폰사업자들은 대체로 중소기업이지요?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 ○ 김재홍 부위원장

- 거기에는 영세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경제 관련 법인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관한 가중처벌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덕, 도의의 영역에 맡겨 놓은 것인데 법으로 가중처벌은 못 하더라도 그만큼 더 잘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선 과문한 제 눈에 띄는 것만 해도 대기업들 (주)씨제이헬로비전(...), 20페이지에 보면 위반내역을 6개 카테고리로 나누어놓았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6개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보니까 (주)씨제이헬로비전, 대기업 CJ의 계열사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6개 중 2개 항목을 위반했습니다. 에스케이텔링크(주),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알려진 SK의 계열사입니다. 6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을 위반했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세종텔레콤(주)도 꽤 큰 회사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거기도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견기업 정도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대기업이라기보다는 별도 개별 기업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주)케이티엠모바일, 케이티 그룹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6개 항목 중에 3개 항목을 위반했습니다. 그 아래 케이티파워텔(주)은 6개 중에 1개를 위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또 이름 있는 회사는 회사 이미지도 있는데 대기업은 그만큼 자본규모도 크고 조직도 크고 인력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또 모범적으로 지킬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가중처벌할 수는 없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래서 한 번씩 곁들여서 이렇게 큰 기업일수록 모범적으로 해 달라고 경고를 하거나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 부과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규모라든지, 또는 대기업 계열사라고 해서 가중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분 다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모범을 보이고 제대로 이런 모든 절차를 잘 지키고 대비를 해야 한다,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어떤 기회에 이런 알뜰폰사업자들의 문제가 발생해서 조사할 때는 예를 들자면 이런 큰 영향력이 있고 선도해야 할 곳 위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런 업체들로 하여금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협찬고지 법규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와이티엔, 씨제이이앤엠(주) (2016-08-037~03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협찬고지 법규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협찬고지 법규위반 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 (주)와이티엔과 씨제이이엔엠(주)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및 위법성 판단입니다. 먼저 (주)와이티엔의 사이언스TV 채널을 조사한 결과, '15년 10월 2일 방송된 '헬스라이프' 프로그램에서 병원명 상호가 표시된 간판을 노출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촬영장소인 병원명을 협찬 고지하였는바,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된 의료광고를 함으로써 방송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씨제이이엔엠(주)의 XTM 채널을 조사한 결과, '15년 9월 30일 방송된 'GET IT GEAR' 프로그램에서 한국마사회의 대표브랜드인 'Let's Run 한국마사회' 표지판을 노출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촬영장소인 '렛츠런파크 서울'을 협찬고지하였는바, 이는 심의규정에서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령과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 주요의견은 생략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안)입니다. 금지품목을 협찬고지한 행위는 방송법 제10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4],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에 따른 과태료 기준 금액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 1,000만원의 2분의 1을 감경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와이티엔의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것이 위반행위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혹시 일부 논의가 있습니다만 병원광고, 의약품광고를 방송에도 허용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방송계에 많이 있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언젠가 본격 논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료법에서 병원광고나 의약품광고를 못 하게 금지된 것은 법에 명문화한 이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것 없이 의료와 의약품

국민 건강에 관한 한...

○ 최성준 위원장

- 죄송한데 의약품이 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의약품만...

○ 김재홍 부위원장

-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할 수 있는데 국민 건강에 관한 한 가장 전문적인 법규가 의료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공익법인들인 의료법인 병원들 간의 과당 경쟁들이 가져올 폐해를 의료계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집행해야 할 법규인데 그것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들 경영이 어려우니까 방송광고를 늘려주는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의견인데 국민 건강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 가져올 폐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병원과 의약품 광고도 다른 미디어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등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방송이 그런 다른 미디어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의견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방송광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다른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만 병원광고는 유일하게 방송에만 금지되어 있고 요사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신문 등 모든 곳에서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의 일원화 차원에서 일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법은 보건복지부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의료법의 기본취지에 맞추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매체에서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은 병원과는 상황이 다른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의견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제작진의 단순한 실수라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헛참고지를 실수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런 의견 제출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이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이렇게 방송프로그램이 나가면서 뒷부분에 협찬고지가 나갔다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편집을 완료했을 때 책임자가 그것을 다 확인하고서 온에어 방송을 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 그 후속조치를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실수를 했는지, 제작진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지, 또 감독을 소홀히 한 국장이나 담당 부장, 여기에 대한 회사 차원의 무슨 인사조치가 있었는지를 챙겨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단순한 실수라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 혹시 그것을 챙겨 보셨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실제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징계라든가 담당자들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해야만 재발 방지가 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규정을 실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전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 같아서 연장선상에서 이 안전 외 협찬고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협찬제도를 방송법에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 **이 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현재 작년에 논의한 이후로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당시에 우리 위원회의 입장은 협찬제도를 방송법에 규정하기보다 시행령이나 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에 담지 않더라도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됐던 협찬제도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시행령이나 규칙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를 위한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 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폐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안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시행령에 넣는 것은 우리가 있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그 후속작업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 법이 통과가 안 되고 폐기된다면 바로 정부 쪽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아무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실무진들이 그 안들을 고민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의 진척사항을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품목도 문제지만 보도프로그램과 같이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입법 미비상태가 지속 되면 지난번에 지적했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실 변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도 적극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작업을 해 놓아야 합니다.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법안에 발의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우리가 내부 규칙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함으로써 시행령이나 규칙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할 사항들이 국회에서 법제화되어 제도 운용상의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지적하신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법은 협찬고지를 기준으로 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보도, 그다음에 토론프로그램에 협찬을 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다양한 안건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논의해서 법 개정 상황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저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하는 것도 그런 쟁점이 없는,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상부문의 최우수상 및 외주제작상 신설을 통해서 2016년 방송대상 시상식 규모를 확대하고, 방송대상의 권위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상 분야는 ‘프로그램 분야’와 ‘특별상 분야’로 나누며,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15년도에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중 최우수 작품을 대상으로, 차(次)우수 작품을 최우수상으로 그리고 6개 부문별로 우수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입니다. 다음 특별상 분야에서는 방송문화·방송언어 등 6개 부문에서 방송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단체 또는 프로그램을 시상합니다. 시상 내역으로는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2점, 특별상 6점 등 총 20점에 대하여 총 시상금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예심과 본심 심사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며, 심사위원은 역대 심사위원들과 상임위원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하고, 예심 위원 1인 이상이 본심 위원에 포함됩니다. 이때 예심 심사위원회는 우수상에 응모한 작품 중 시상 편수의 5배를 본심에 추천하고, 본심 심사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분야 예심을 통과한 작품과 특별상 분야에 응모된 작품을 심사하여 대상 및 각 부문별로 수상작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5월 2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이기주 상임위원

- 시상내역에 보니까 ‘최우수상(신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대상과 최우수상인데 훈격에 ‘국무총리(방통위원장)’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안전을 보고하기 전에 그 훈격을 국무총리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확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의도로는 새로 신설되는 최우수상 신설이기 때문에 가급적 훈격을 높여서 총리께서 참석해서 수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실무협의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가 되더라도 실무협의를 좀 더 해서 이왕이면 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훈격이 확정된다면 그것을 외부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전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 마련입니다. 개정 사유는 방송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하는 자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 대상에서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산상황 제출시기 및 제출자료 규정입니다. 개정 사유는 방송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산상황 공표시기를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황 제출시기, 제출자료 및 공표시기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상황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자료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4월에는 위원회 의결 및 법제처 심사, 5월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으로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쭙 보면 원래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최종적으로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 세부기준이 결정되는 것은 '16년 5월경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재산상황을 제출하게 될 IPTV 사업자 등에게는 사전설명을 하고 있고 작년에 준해서 재산상황을 받고자 진행 중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IPTV 사업자도 방송법이 개정되면 바로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할 준비를 하라고 한 것입니까?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 8. 심의·의결 제의사항

### 가. (주)문화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건

○ 최성준 위원장

- <심의·의결 제의사항 가> ‘(주)문화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건’은 김재홍 부위원장님과 고삼석 위원님께서 직접 제의하신 의안입니다. 어느 분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정책국 담당 과원들이 있습니까? 사무처 간부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 최성준 위원장

- 방송정책국장님과 또 누가 계십니까? 방송총괄과장도 계시고 지상파정책과장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결안건은 아니지만 안건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보고자가 아니어서, 이 자리가 보고자석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앞으로 나와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고 그러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옆에도 앉고 그러시는데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대표로 국장님이 여기에 앉아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뒤에 앉아 계시지요. 여기에

자리 하나 있으니까 국장님 가서 앉으시고….

○ 고삼석 상임위원

- 국장님, 1년 만에 오셨는데 소신껏 이야기해 주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건은 고삼석 위원과 제가 공동발의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직접 의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무처 간부들, 담당 국·과에서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근거는 2월 1일 티타임에서 논의하자고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2월 1일자 티타임에는 담당 국·과에서 아무런 자료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내놓고 토의하다가 다음으로 미루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또 하나는 상임위원의 의안 제출권, 제안권은 법적 근거가 있고 법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안건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보고사항>보다 맨 아래에 <심의·의결 제의사항>으로 들어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정확하게 <심의·의결 제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은 안건을 제의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심의·의결사항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있는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해서 심의·의결 제의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안건 구분을 <의결사항>, <보고사항>으로 하는데 <의결사항>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표결로 해서 의결할 내용인데 아직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건은 안건입니다만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점이 문제인데 <의결사항>으로 놓고 찬반 토론을 하고 표결로 할지 컨센서스(Consensus)를 만들지 찬반 가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의 의안 제출권은 법에 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소수자들도 사무처를 통하지 않고 또는 위원장의 결재 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결대상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너무 소수자들의 법적으

로 명시된 권리까지도 이렇게 무시한다고 할까,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소수자들의 권리는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예를 들면 비토(Veto)권 같은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일이라서 다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최후의 수단은 퇴장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제가 분명히 퇴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전으로 성립할 수 없다. 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퇴장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 안전이 공식 전체회의에 안전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퇴장한다” 그것은 소수자로서의 최소한의 비토(Veto)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퇴장도 아주 중요한 의사표시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퇴장을 놓고 나간 뒤에 많은 논란이라고 할까, 비아냥과 비판과 심지어 제3자가 보기에 조롱의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위원회의 운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의견은 현실적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처를 통하지 않고 다수 위원들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도 소수 상임위원들도 정식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의안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드린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의결사항>인지, <보고사항>인지, <의결사항>도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정식 안전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분명히 심의·의결사항으로 보고 의결안전으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로 길게 시간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안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단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170일간 공영방송 MBC 파업이 있었습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든, 무슨 원인이든,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2월 20일 문화방송 경영진은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사를 해고했습니다. 2014년 바로 재작년입니다. 저희 임기 직전입니다. 서울남부지법 그리고 4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것은 저희 임기 중입니다, 징계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MBC노조 부당해고를 당한 분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5일, 야당 의원입니다만, 미방위 국회의원 최민희 의원이 최승호, 박성제 불법 해고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국민 여론화됐다고 생각하고 공론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1월 27일 전국언론노조를 포함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MBC 부당해고를 포함한 편성제작권 침해사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 특별조사를 요구했고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에게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야 3당 합동 정책토론회에서, 제가 거기에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도 많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책과 비판과 압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노조원인 기자, PD의 불법해고 등 가칭 MBC 녹취록 공개사항은 물론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직접 육성으로 녹음됐기 때문에 보면 문화방송의 부당 불법해고와 사회적 책임인 공적책임을 저해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법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또 나가서 조사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해고 노동자의 불법해

고, 언론자유 이전에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와서 인권 침해사고로 간주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우리의 직무입니다. 부당해고, 불법해고에 대한 우리의 직무는 MBC의 조직 안정화, 노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직무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송의 사회적 책임, 공적책임 방기입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됩니다. 하나는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재허가 과정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고, 제15항 시청자 불만처리, 그 뒤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입니다. 시청자 불만사항? 대표적으로 시청자단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언론노조와 언론운동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MBC 사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달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을 요청했던 것이 전형적인 시청자불만사항,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는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고 또 자제해야 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여론화되고 공론화됐고 시청자 단체들이 대대적으로 나와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스스로 사회적 책무와 공익성 의무를 지킬 때 보호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 무고 해고를 당했다고 기자, PD들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고 그것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12월 재허가 때 부여한 권고사항을 점검해 왔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재임기간인 2014년 11월 또 다시 노사갈등이 촉발될 상황에..., 그것은 경영진의 교양제작국 해체였습니다. 교양제작국이 어떤 국이었습니까? 비판 저널리즘입니다. 방송 언론의 비판 저널리즘이 주로 만들어지는 교양제작국을 해체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자, PD들이 반대, 반발했고 노사갈등이 촉발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재허가 권고사항을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실행에 달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해 온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밖에서 '이런 상황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뭐하고 있느냐'고 비판하고 압박을 가할 때 저는 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 MBC 녹취록 사태가 하나는 방송법 제4조제2항과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아까 말씀드린 것,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 매우 허점이 많고 미비한 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중요한 것은 시청자단체, 시민사회의 요구를 근거로 MBC 경영진과 MBC에 대한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 그 자료들을 분석·정리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후속조치인 제재나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내역은 제가 우선 몇 가지 썼습니다만 이것은 조정·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만 방송문화진흥회는 너무 외부 감사, 감시, 견제가 부족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늘 나왔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문화방송 경영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지키는데 필요한 어떤 관리감독권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법률과 제도에 허점이 많다. 그 개선안도 논의해서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MBC 경영진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결해 달라는

의안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의결주문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에 보면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에 제6호와 제15호 또 제29호를 들은 것으로 봐서 거기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먼저 이것이 저희 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 업무가 예를 들어서 '백'이라면 저희 심의·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중 '몇 십'에 해당되는 것이 심의·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업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의결사항이 제한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중 어느 한 호에 해당되어야 저희가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 먼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안자시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법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녹취록을 통해 MBC 고위 임원과 주요 간부들의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눈으로 그리고 시청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방송의 공적책무와 공공성·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있는 것이며, 또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우리들이 지켜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 이를 MBC 내부로부터 훼손한 경영진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노사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 그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근거 없이 노조원들 해고하는 것을 넘어서 경력직 직원 중심으로 채용하고 또 교양제작국 같은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MBC에 대한 장악력, 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에서 특정 토론자들을 제외하자'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개입이 본인들 진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 인터넷 매체와 결탁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오히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송문화진흥회가 해당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사실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MBC 경영진의 전횡과 비정상적인 경영 및 방송 운영으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책임 실현이나 공공성·공익성 확보가 불가능한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비상한 상황이라면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들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규에 근거해서 MBC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단계



로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작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을 명분으로 불개입한다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경영진들의 위법행위를 옹호하고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무너진 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한이 없다, 책임이 없다,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법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광의로 해석해서 우리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관련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능하면 우선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먼저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논의를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차례 논의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MBC 녹취록 관련해서 그 사안의 중대성 여부, 타당성 여부, 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의결사항이 당연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간 어떤 형태로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위 말해서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또 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직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안은 저희의 업무가 될 수 없다, 직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 부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느냐?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왜 제가 법적근거가 그렇게 될 수 없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두 분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건에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12조제6호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제15호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그리고 제29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은 허가 내지 재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결하고, 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심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허가조건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권고사항을 문서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의결한 안건을 보더라도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은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뒷단은 제가 보기에 굳이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앞단의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제가 과거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안건으로 처리된 제목만 한번 봤습니다. 공동주택 단체수신 계약의 문제점, 가입자 동의 없는 가입상품 변경 영업, 지상파 HD방송 재송신에 관한 사항, 허위·과장된 디지털 전환 영업, 방송사업자의 과도한 해지 방어 행위 등등 이렇게 해서 주로 대부분 유료방송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이용자, 가입자 입장에서 어떤 계약상의 문제점이나 불만, 애프터서비스가 잘못되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일부 지상파인 경우에 재송신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신상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처리해 왔기 때문에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안은 저는 제15호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보더라도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제29호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해

당되느냐? 여기에 인용되는 법을 보면 방송법도 있고 방송문화진흥회법도 있고 민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명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제29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건에 보니까 과거 '문화방송에 대한 권고사항'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재허가서에 보면 재허가 조건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출요구 대상 자료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언제 어떤 자료를 내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페이지 권고사항을 보면 '아울러 재허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는 향후 재허가 심사 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할 계획이므로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허가서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문서행위로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재허가 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심의·의결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제안하신 문건에 보니까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연히 이것은 방송사 외부로부터의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98조(자료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으로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나 각종 제재, 과태료 부과 처분 등등 이런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98조 외에 개별조항이, 어떤 경우에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이나 민법의 준용규정 이런 것들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에 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임명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상황을 제출받는, 주로 결산, 이런 회계자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 취지나 명문규정으로 봤을 때 이것을 확대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사안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는 것도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심의·의결사항이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기주 위원님 말씀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들은 제가 피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관점의 문제입니다. 저는 꼭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170일간 파업에 들어간 그 상황과 매우 흡사한 상황으로 번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관계에서 계속 악화되어 왔고, 또 그 후유증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적인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이 사안이 대단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또한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또 시점도 총선을 바로 직전에 눈앞에 둔 시점이고, 그래서 그동안 언론시민단체라고 하는 일종의 제3자입니다. 제3자가 MBC 내부의 노사 분쟁에 개입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어떤 주장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노조 입장만 여기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간다면 균형적 시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또 유지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주장에 편승해서 마치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는데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나온 본부장의 소위 MBC 녹취록 시점이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그 녹취록은 시점으로 볼 때 노사갈등이 아주 첨예화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서 담당 본부장이었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극히 사적인 자리에서 울분을 표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자기의 직무에 대해 과시 내지는 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자리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자기 지인이나 다름없는 아주 친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직분을 과시해서 ‘내가 다 장악하고 있다’, ‘편성도 내가 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제가 녹음 육성을 직접 듣지 않고 녹취록 보도된 것만 봤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편성에 개입해서 자기 직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편성책임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이 실행됐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정확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우리가 방송법 제4조제3항 이런 부분..., 편성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임원회의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면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또 관여하고 있는 임원으로서 당연히 어떤 편성에 관한 의견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임원회의에서는 그것이 자유롭게 개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본부장이 어떤 공적인 자리라든가 또는 편성에 책임자에게 압박을 했대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아무 관련 없는 언론인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고간 것을 우리가 침소봉대해서 생각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한 방송을 감시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의 자율적인 편성과 독립성, 또 독자적인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MBC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결산서를 제출받고, 또 정관 변경에 관한 것을 인가해 주는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취지는 곧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에 정부기관이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그 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로 하여금 이상이 있으면 감독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진할 경우 우리가 방송 재허가 절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약 1년 전에 MBC 회신한 내용이 나옵니다. ‘재허가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는 향후 재허가 심사 때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뭐가 터져 나올 때마다 개입해서 ‘자료를 내놓아라’ 하는 것은, 또 특히 자료제출 요구에 보면 물론 부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경영의 내부자료, 또 <100분 토론>의 출연진에 대한 출연을 시킨 배경 이런 것까지..., 다시 말하면 제작진의 판단까지도 마치 우리가 개입

해서, 관여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식의 과도한 관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제출은 우리가 재허가 때 심사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체크해서 예를 들면 감점을 매겨놨다가 재허가 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온당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로 하여금 그렇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최소한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사 내부의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겠다, 특히 정치적 사안으로 자꾸 변질된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 나가야 할 정부기관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먼저 법리에 대한...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사안을 바라보는 두 분 위원님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의견 내는 것을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법 해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2조제6호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만약에 이기주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이것은 반론이 아닙니다. 그 논리 그대로 한다면...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상대 위원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논리로 하면 이것이 법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에 관한 사항' 이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저는 우리가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라는 데 동의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광의로 '허가 및 재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간략히 언급했습니다만 2013년 MBC가 재허가 심사를 받을 당시 그 신청서를 보면 사업계획서 맨 앞에 '이 사업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국민과 정부에 약속한다'는 서약서를 첨부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 사업계획서가 성실히 이행됐다면 지금의 MBC 사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MBC가 당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에 근거해서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관련된 규칙 제2조 용어를 보면 시청자의 불만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분명히 다 포함됩니다만 제1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불만이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말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공영방송 MBC가 공적책무·공공성·공익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MBC 경영진들이 현재 일방적으로

경영을 함으로써 방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졌다' 이런 비판은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시청자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따른 시청자 불만처리 사항으로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편성의 자유와 독립 문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에 나와 있다시피 MBC 고위 임원과 그 주요 간부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프로그램에서 누구누구를 빼라', '누구누구를 넣어라' 하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사안이 자칫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녹취록의 내용이나 지금 MBC의 경영상황을 종합해 보면 '경영진들이 이념적·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되게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립을 지킨다면 우리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횡을 일삼고 있는 MBC 경영진들을 옹호하고 보호해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 ○ 김재홍 부위원장

- 제일 핵심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 방송법 제4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께서는 이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고 어떤 위원님께서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방송법 제4조제2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5년도 현재 판결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주로 정치권력 외부에 대해서 방어하는 장치이다. 내부는 아니다' 하고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어서 제3항을 보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할 뿐이지, 방송편성 제작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방송언론의 내적 자유, 내부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현재 결정 2005년도 거기에서도 그대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국가로 대표되는 외부 세력에 의한 규제·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제2항이고, 제3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때 당시 방송 문제가 아니고 신문 문제인데 신문 기업 내부에서 발행인과 편집 종사자 간의 관계를 규율한 소위 신문의 내적 자유에 관한 규정이다, 이것을 준용해서 방송 문제에도 많이 준용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번 건은 정말 방송의 소유자와 경영진 등으로부터의 내적 자유, 편성제작권의 독립과 자율을 규정한 것인데 이 규정 조항을 위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2012년 MBC의 장기 파업, 다시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상처가 덧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재허가 심사 때 보겠다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작년입니까? 교양제작국 폐지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것은 비정상 상황이고 비상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달리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사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누구에게 물어봐도 MBC의 경영진과 노조 일반 종사원과의 관계를 봤을 때 어느 쪽에 무게가 지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성규약, 편성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제대로 상의해서

하고 있느냐? 심지어 그 녹취록을 보고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키워야 한다”, “경력직을 채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하는 데도 나중에 노조에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역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 어떤 집단도 정치 권력을 포함해서, 언론을 포함해서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것, 금기사항 아닙니까? 공영방송의 수뇌진이 ‘경력기자를 채용하면서 지역을 보고했다’ 여러 가지를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제가 토론장에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상검증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정말 공영방송의 기자, PD 일반 공개채용을 없애고 하지 않고, 경력직을 뽑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공영방송 명색이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정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금기행위까지 해 가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월호 사태 직후에 그것이 그나마 봉합 정리된 과정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에 대해서 극단적인 불공정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피해 유족들이 공영방송사에 몰려가서 항의했고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면담까지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무가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때도 오늘과 비슷한 주장으로 방어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2014년 5월 15일 긴급사안으로 발언을 하고 여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정말 지금과 똑같은 조치, 진상 파악을 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해야 한다는 안전을 5월 23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를 도저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소수자로서 의결을 결정할 수 없고 다수결로 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독 기자회견으로 KBS 이 사태, 조기 수습에 이사회가 나서라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그 날 오후 당시 최고경영자 사장 해임 제청안이 의결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보고 한숨을 내쉬었고, 그다음 날 KBS 제1노조, 제2노조는 업무에 복귀했고 방송을 완전 정상화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 내부의 움직임도 일어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이 MBC 사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정도의 직무수행, 영향력 행사 개입의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무슨 민주주의 규범, 헌법적 가치, 언론 자유를 떠나서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저께 국회 토론회에 무고 해직이라고 여기면서 얼마나 억울해하면서 그 당사자 최승호 PD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 6월 해직된 뒤에 4년 동안 개인의 삶은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가정생활까지 파탄 났고 그동안에 부친상을 당했고 장인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사항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앞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수행을 안 하면 정말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먼저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12시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하시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녹취록의 주인공이 과연 정말 편성에 깊숙이 개입해서 그런 식으로 실행에 옮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서 조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만 그것도 최소한 방송문화진흥회로 하여금 법에 규정된 대로 방송문화진흥회가 그렇게 지휘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MBC 내 모든 구성원들은 노와 사를 막론하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4년 전에 총선을 앞두고 파업에 돌입해서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을 아직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또 다시 이것이 계속 번져 나가서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이 되어서 온갖 시민단체도 다 뛰어들어서 이것이 또 계속해서 나간다면 아마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잘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방송문화진흥회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내부적으로 점검사항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재허가 때 반영해야 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견어낼 수 있는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는 또 총선에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사가 다 공히 지난번 MBC 파업 사태도 너무 정치적인 주장에 휩쓸려서 이미 노사관계를 떠나서 완전히 진보와 보수 간 양 진영 간의 대결로 되어 갔던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가급적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전에 관해서 우선 첫 번째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이 안전이 저희 위원회의 의결사항인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전으로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의결사항인지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쪽들어보면 제안하신 두 분께서는 의결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두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2조 심의·의결사항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의견이 다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들고 있는 제6호, 제15호, 제29호 어디에도 지금 이 안전은 해당하지 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것이 심의·의결사항이나, 아니냐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을 더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 다시 한 번 이것이 심의·의결사항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보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잘 모아지면 좋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안건을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서 계속 논의를 해야 서로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어떤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논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심결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제쳐 놓고라도 지금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민법 제37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 일상적인 권한으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민법을 준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부분에서 잠시 언급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서, 결산서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면 민법 중 일반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법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특별법으로서 예산서, 결산서의 수령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민법에 있는 모든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의견도 자꾸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저와 같은 의견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심의·의결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정해지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저는 심결사항인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수의 위원들도 반대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민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방통위의 권한 자체까지도 다수의 위원들께서 '나는 이와 달리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 최성준 위원장



-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방송문화진흥회를 둔 취지가 무엇이나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모든 자료를 다 달라고 한다면 그 방송문화진흥회가 과연 방송통신위원회와 그다음에 MBC 사이에서의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된 취지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얼마든지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오늘 두 분이 제안하신 이 내용이 제가 아까 3페이지에 심의·의결사항이나, 아니냐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 장까지 다 포함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심의·의결사항 해당 여부와 자료제출 받도록 하는 것을 별개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아젠다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예를 들어서...

####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이 일을 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데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 ○ 최성준 위원장

- 아니지요.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심결사항 해당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합니다.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 감독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방송문화진흥회에 일상적으로 자료요구하면 그것이 방송법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까? 그것은 국회법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와 MBC를 정당하게 감독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민법,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료제출 요구는 왜 합니까?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떤 의견도 못 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꼭 어떤 의견도 못 낸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료제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일반 사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그것 궁금하니까 한 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확인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주어진 공적책무와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지금 계속 논의를 해서는 한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이 저도 다 같이 심의·의결사항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사 다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우선 '심의·의결사항', 이 문제가 큰 전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간담회에서 다시 또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그대로 보류시킨 상태로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역시 소수자들의 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부결시키지 않고 보류해서 계속 논의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한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안 보류와 관련해서 하나 새로운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방송법 제4조 위반이라고 분명히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는 방송법 제4조 위반행위가 있었다, 불법행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내부에서 또 논란이 있고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어쨌면 바깥 시민단체들이 고발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논의하고 재차 하기로 한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 찬성과 반대 양쪽 상임위원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TF처럼 필요한 자료도 검토하고 필요하면 면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들이 고발하는 것, 저는 언론 영역에서 형사고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도 해 주지 않고, 억울한 사람은 있고, 국민 여론은 압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최소한 국회 상임위 미방위에서 국정조사하고 불러서 청문회 경위를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직무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손 놓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차원의 대응방식이 나올 텐데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TF라도 가동하기를 제안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참고로 우선 말씀드리면 제4조제3항은 형사처벌 규정도 없고, 그다음에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조제3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조제3항으로 그렇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TF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은 처음 제안하신 것이라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런습니다만 한편 생각에는 저희들이 규모가 커서 어떻게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으면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조직이 필요하겠지만 저희 위원이 다섯 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고, 또 사무국에 의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별도의 TF가 저는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하셨으니까 다음 기회에 시간을 가지고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9. 기 타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2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0. 폐 회

###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시 15분 폐회 】